

#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1,465,366	12,343,961
일반회계	370,000,000	11,100,000
일반회계	370,000,000	11,100,000
기타특별회계	31,165,366	934,9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066,000	91,98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033,366	61,00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00,000	15,0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1,470,000	44,100
주택사업특별회계	587,000	17,61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470,000	14,1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70,000	74,100
치수사업특별회계	4,080,000	122,4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475,000	164,250
대지보상특별회계	413,000	12,39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01,000	9,030
공기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공기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42,50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